

일회용 수송(택배)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

1 포장폐기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

- 1 사용한 택배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➡ 포장공간비율·횃수 미적용
- 2 2개 이상의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 ➡ 포장공간비율·횃수 미적용
- 3 판매했던 제품(택배포장 完)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택배포장하는 경우 ➡ 포장공간비율·포장횃수 미적용
- 4 종이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➡ 포장공간비율 기준 완화(50% 이하 →70% 이하)

2 제품의 파손,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사항

- 1 보냉재를 넣어 포장하는 경우 ➡ 보냉재를 제품에 포함하여 체적 산정
※ 보냉재로 드라이아이스 사용 시 드라이아이스 승화에 따른 빈공간은 제품체적에 포함
- 2 보냉, 제품보호 및 물기로부터 상자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캡 파우치 등으로 포장 후 택배포장하는 경우 ➡ 포장횃수 미적용
- 3 파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대포장*한 경우 ➡ 포장공간비율·횃수 미적용
*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반액체 녹는제품 및 기준준수에도 불구하고 KS 포장 안전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
- 4 택배상자 내부에 격벽(고정재)을 두는 경우 ➡ 격벽은 포장횃수에서 제외, 격벽과 택배상자 사이의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

3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한 예외사항

- 1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 ➡ 포장공간비율 미적용
* 긴 제품 : 짧은 두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% 이하인 것
* 납작한 제품 : 두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
- 2 타 법령에 따른 포장, 개인의 해외직구 ➡ 규제 미적용